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41 발의연월일: 2024. 12. 5.

발 의 자:이인영・박상혁・이정문

한정애 • 강준현 • 전진숙

김영진 • 백승아 • 이연희

장철민 · 김성회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와 권한을 법률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실효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상향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있는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대책위원회에 상정되는 관계기관의 대테러정책·제도 관련 안건 의 인권 보호에 관한 자문 및 개선 권고
- 2. 대테러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관련 민원의 처리
- 3. 그 밖에 관계기관 대상 인권 교육 등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
- ③ 인권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 중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인 권보호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인권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 또는 제3항에 따른 권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대테러 인권보호관) ① (생 | 제7조(대테러 인권보호관) ① (현 |
| 략) | 행과 같음) |
| <u> <신 설></u> | ②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
| | <u>직무를 수행한다.</u> |
| | 1. 대책위원회에 상정되는 관계 |
| | 기관의 대테러정책・제도 관 |
| | 련 안건의 인권 보호에 관한 |
| | 자문 및 개선 권고 |
| | 2. 대테러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
| | 관련 민원의 처리 |
| | 3. 그 밖에 관계기관 대상 인권 |
| | 교육 등 인권 보호를 위한 활 |
| | <u>동</u> |
| <u><신 설></u> | ③ 인권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
| | 직무수행 중 인권침해 행위가 |
| |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 |
| | 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책위원 |
| | 회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관계 |
| |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
| | <u>수 있다.</u> |
| <u><신 설></u> | ④ 제3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
| | 관계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 |
| | 를 인권보호관에게 통지하여야 |

| | <u>한다.</u> |
|--------------------|-----------------------|
| <u><신 설></u> | ⑤ 인권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
| | 직무수행 또는 제3항에 따른 |
| | 권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 |
| | 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
| | 을 요청할 수 있다. |
| ② (생 략) | <u>⑥</u> (현행 제2항과 같음) |